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8
----------	-----

2009년 6월 3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18일, 양창호 의원 외 13인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9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양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에는 교육청에 설치된 현 교육위원회 업무 중 서울시교육청 관련 업무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이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소관 조정을 통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의 개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문

- 가. 2010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 설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변경 및 소관 조정이 필요한 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심도깊게 수렴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5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하되, 9개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받고 각 정당별 1인씩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위원회 업무 중 서울시교육청 관련 업무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바, 이런 현실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포함 9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2010년 7월에는 교육위원들의 선출과 더불어 “교육위원회”의 분리로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으로 소관 조정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현재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교육청을 분리하게 되면 대변인, 홍보기획관, 문화국, 시립대학교·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남게 되는 바, 타 상임위원회와의 업무량 조정과 제8대 의회상 정립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본안건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회사무처는 수차례 회의와 자료수집 및 검토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안이 시의회 전체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 등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여 심도깊은 검토가 요구됨.

- 다만 동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이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같이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28
----------	-----

발의년월일 : 2009년 6월 18일

발 의 자 : 양 장 호 의원 외13명

1. 주 문

가. 2010년 7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 설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수와 명칭변경 및 소관조정이 필요한 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심도깊게 수렴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하되, 9개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받고 각 정당별 1인씩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에는 교육청에 설

치된 현 교육위원회 업무 중 서울시교육청 관련 업무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이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소관 조정을 통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의 개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에는 교육청에 설치된 현 교육위원회 업무 중 서울시교육청 관련 업무를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이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수와 소관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현재 운영위 포함 9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지정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바, 교육위원회의 설치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맞추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의회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발맞추어 보다 합리적으로 「서울특별시의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09. 6. .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일동